

**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
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(변경)열람공고**

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(변경) 열람공고하오니 토지,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 및 사업인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19일

함 양 군



**1. 공익사업의 개요**

| 사 업 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규모                  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| 사업시행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태관천<br>자연재해위험<br>개선지구<br>정비사업 | 함양군 휴천면<br>대천리·태관리,<br>유림면 유평리<br>일원 | 축제·호안정비<br>L=2,079m 등 | 2020. 3월 ~<br>2021. 12월 | 함양군수  |    |

**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**

- 가.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정 지구에 편입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: 붙임 참조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(미등기 소유자·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.

**3.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**

-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도시과(복구지원계)
- 주 소 :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
  - 전화 및 팩스번호 : ☎ 055-960-5202, FAX 055-960-5763

#### 4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0. 3. 19 ~ 2020. 4. 2. (15일간)

- 가.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(이해관계인)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나.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 하거나, 4월 2일까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.
- 다.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:00 ~ 18:00이며, 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#### 5. 보상시기 및 방법

- 가. 보상의 시기는 2020년 3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
(단,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- 나. 보상가격 결정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.
- 다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.
- 라.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,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(055-960-52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보상의 절차

- 가.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보상협의요청(개별통보) → 협의(계약체결)→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 → 공탁
- 나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기 타

- 가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나.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다.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
라.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.

마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보상절차, 토지조서의 열람, 이의신청방법(소정양식),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[전화번호 : 055-960-5202]